

운영규정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등)
-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 (8)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퇴직금,상여금 등)
-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포상,휴가 등)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12) 근로조건의 명시, 퇴직급여제도, 임금지급,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관한 관련규정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운 영 규 정 개 요

1 시설기본정보

기관명	은현노인복지센터	전화번호	061-654-8409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센터	팩스번호	061-654-8410
제공급여 종류	방문요양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써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2 직원 근무 체계

총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명	1명	3명	53명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이용시작일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계약해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보험료 순위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9%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6%
기초 수급권자	0%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급여비용	방문시간	급여비용
30분이상	16,630	150분이상	48,250
60분이상	24,120	180분이상	54,320
90분이상	32,510	210분이상	60,530
120분이상	41,380	240분이상	66,770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제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가준에 준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 기록 및 보고 → 조치 →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완료

8 기타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 관리 규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 함.

9 **급여제공 지침 10가지**

항 목	내 용
1.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에 대한 기초지식 · 종류 · 예방 및 관리 ·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2.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 근골격계질환예방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 증상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4.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의 정의 · 요인 · 예방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5.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 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대응방법
6.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의 정의 ·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의 정의·발생요인 · 증상 · 예방방법 · 욕창예방 관리 및 치료
8. 응급상황대응지침	응급 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9. 종사자윤리지침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0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의 정의 · 종류 · 증상 · 예방 · 관리 및 치료

비상연락망

< 비 상 연 락 망 >

구분	명칭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기관	대표	061)654-8409	010-7653-8409	
	응급출동	119		
	노인학대	1577-1389		
의료 기관	여수전남병원	061)640-7575		
	여천전남병원	061)690-6000		
	제일병원	061)589-8120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응 급 상 황 시 >

119연락 → 환자 상태 관찰 → 보호자 연락
→ 센터연락

평가등급



(예시)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대분류 영역별 수준					
대분류영역	기초생활	환자 및 안전	수급자관리보장	급여제공과질	급여제공평가
별 개수	★★★★★	★★★★★	★★★★★	★★★★★	★★★★★
점수	100점	100점	95점	84점	100점

▶ 별개수 : 환산점수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5개()부터 ☆☆☆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최대 5개() 부여 ☆☆☆☆☆
 40점 미만은 별개수는 표시하지 않고 환산점수만 표시
 ▶ 점수 :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한 점수(소수점이하 표기하지 않음)

은현노인복지센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학대안내 I

우리는 ^{수급자, 기관 직원}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안내 II

○ 노인학대 대응절차 (1577-1389, 112)



기관 직원 인권

<기관 직원 인권 침해 유형>



폭언

비난, 고함, 욕설 등 언어적 부당행위



폭행

요집기, 밀치기, 주먹질 등 신체적 부당행위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등 성적 부당행위



초과업무

서비스 시간 초과 업무 요구



규정 외 업무

입상생활 외 생업 지원 요구



금품 요구

봉사자 사비로 수급자 물품 구매 요구

기관 직원 존중은 인권친화적 돌봄의 시작입니다.